

귀 직계존비속간 양도하는 재산이 개인사업체인 경우에도 상기 규정은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며,

※ 특수관계자 해당여부 및 범위

상속증여세법상 개인사업체의 평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사업체의 재산별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내지 제66조(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합계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체의 재산가액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59조(무체재산권의 평가) 제2항(영업권의 평가)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영업권의 가액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제62조(선박 등 그 밖의 유형재산의 평가)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제64조(무체재산권의 가액)

제65조(그 밖의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제66조(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

#### ※ 상속증여세법 기본통칙 64-59…1 【 영업권의 평가 】

- ① 개인으로서 경영하는 사업체의 영업권을 평가하는 경우 영 제59조(무체재산권의 평가) 제2항에 따라 평가기준일 전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계산할 때 영 제56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제4항에 따른 「법인세법」 상 각사업연도소득은 「소득세법」 상 종합소득금액으로 보며 같은 조 같은 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상 동일한 성격의 금액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개정 2019.12.23.>
- ② 영 제59조(무체재산권의 평가) 제2항에서 “평가기준일 현재의 자기자본” 이라 함은 영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제1항에 따라 계산한 해당 법인의 총자산가액에서 부채를 뺀 가액을 말하며, 이 경우 영 제59조(무체재산권의 평가) 제2항에 따른 영업권은 자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05.20.>

#### ※ 상속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 【무체재산권 등의 평가】

① 삭제 <2014. 2. 21.>

② 영업권의 평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초과이익금액을 평가기준일 이후의 영업권지속연수(원칙적으로 5년으로 한다)를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매입한 무체재산권으로서 그 성질상 영업권에 포함시켜 평가되는 무체재산권의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평가하지 않되, 해당 무체재산권의 평가액이 환산한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영업권의 평가액으로 한다.

<개정 1997. 11. 10., 1998. 12. 31., 2000. 12. 29., 2003. 12. 30., 2008. 2. 29., 2020. 2. 11., 2021. 1. 5.>

[최근 3년간(3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수로 하고,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제3항 제2호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한다)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가액 - [평가기준일 현재의 자기자본 × 1년만기정기예금이자율]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상증칙 제19조)으로 정하는 을(10%)]

⑦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권을 평가함에 있어서 제시한 증빙에 의하여 자기자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04. 12. 31., 2005. 8. 5.>

1. 사업소득금액  $\div$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토지 · 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 제10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자기자본이익률
2. 수입금액  $\div$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토지 · 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 제10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기자본회전율

[제목개정 2014. 2. 21.]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토지 · 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

① 법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란 취득일 또는 양도일까지 납입한 금액과 취득일 또는 양도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0.2.18, 2018.6.5>

② 법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 제1항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1조[지상권등의 평가]제1항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개정 2010.2.18>

###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6.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다만, 제8호를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제3항제8호리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30  
나. 제21조[기타소득]제1항제18호 및 제21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5  
다. 삭제 <2014.12.23>  
라. 그 밖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0

(4) 기타소득 범위 및 필요경비율 조정 [소득법 제19 ①, 제21 ①, 제45 ②, 소득령 제32, 제 155 ①, 제87]

현 행	개 정 안
<p>■ 필요경비율 80%* 적용대상 기타소득</p> <p>*필요경비 : Max { ① 실제 소요비용, ② 수입금액 × 80% }</p> <p>▷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거나, 순위 경쟁 대회에서 시상하는 상금과 부상</p> <p>▷ 주택입주 지체상금</p> <p>▷ 지역권 · 지상권의 설정 · 대여 소득     &lt; 신 설 &gt;</p> <p>https://cafe.daum.net/transtax/QNGA/55</p> <p>▷ 무형자산*의 양도 · 대여소득     * 광업권, 어업권, 상표권, 영업권 등     거주 구 분      코 드      구 분 명     거주      72      광업권 등(필요경비 60%)</p> <p>▷ 원고료, 인세 등</p> <p>▷ 일시적 강연료, 자문료 등</p>	<p>■ 기타소득범위 및 필요경비율 조정</p> <p>[ 현행 80% 유지 ]</p> <p>▷ 사업소득으로 과세</p> <p>▷ 공익사업과 관련된 지상권 등의 설정 · 대여소득 : [2018년] 70% → [2019년 이후] 60%</p> <p>[ 2018년 ] 70% → [ 2019년 이후 ] 60%</p>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7. 광업권 · 어업권 · 양식업권 · 산업재산권 · 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 · 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 · 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 개정이유 > 사업소득과의 과세형평 제고

< 적용시기 > - [기타소득 범위] 201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 분부터 적용 - [필요경비율] 2018.4.1.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 “공동사업자 탈퇴하며 영업권 지분 양도하고 그 대가 지급받은 경우”
- 국세청, 공동사업장 지분 양도하고 지급받은 대가 소득구분 사전답변

공동사업자 구성원 중 한명이 공동사업을 탈퇴하면서 자기지분을 양도하고 받은 영업권상당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그 영업권은 무형자산이라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 국세청은 공동사업장 지분을 양도하고 지급받은 대가의 소득구분에 대해 이같이 해석했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중 1인이 해당 공동사업을 탈퇴하면서 자기지분을 양도하고 받은 영업권상당액은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제1항 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이라고 밝히고 “**해당 영업권**은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감가상각액의 필요경비계산] 제2항 제2호에 따른 **무형자산**에 해당한다.”고 회신했다.

질의인 L모씨는 R모씨와 oo이라는 사업체를 공동사업으로 운영하던 중(공동사업자 지분 L모씨 55%, R모씨 45%)

2020년 7월 공동사업자 R씨가 L씨에게 공동사업자 지분 45%의 영업권을 평가해 10억8천만 원에 양도하고 공동사업에서 탈퇴하기로 약정했다.

질의인은 이와 관련해 공동사업장의 지분을 양도하고 지급받은 영업권 대가의 소득구분 및 지분을 양수하고 지급한 영업권의 무형고정자산 해당여부에 대해 물었다.

### [소득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683 [법령해석과-3375] 2020. 10. 22]

현행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제1항에서는 “기타소득은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7호에서

“**광업권 · 어업권 · 양식업권 · 산업재산권 · 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 · 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 · 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등]** 제3항에서는 “법 제21조(기타소득) 제1항 제7호에 따른 영업권에는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 · 허가 · 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하되, 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과 함께 양도되는 영업권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감가상각액의 필요경비계산]** 제1항에서는 “법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 제1항 제6호에 따른 감가상각비(이하 ‘상각액’이라 한다)는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투자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의 상각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 각 과세기간마다 감가상각자산별로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하여 이를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계상한다.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 중에 사업을 개시하거나 폐업한 경우 또는 해당 과세기간 중에 감가상각자산을 취득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상각범위액에 해당 과세기간 중에 사업에 사용한 월수를 곱한 금액을 12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상각범위액으로 하며, 월수의 계산은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항에서는 “제1항에서 ‘감가상각자산’이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형자산”으로 규정하고 가목에서 “**영업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으로 규정하고 있다.